



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법·제도 및 지침

2020. 06. 10.

국가방재연구센터

국토연구원



KRIHS





Part 1.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
제도 추진 경위



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추진 경위

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도입(2011.12)

- 2011년 우면산 산사태, 강남 침수피해를 계기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도시계획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
-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, 도시·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하고 토지이용,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함

■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('12.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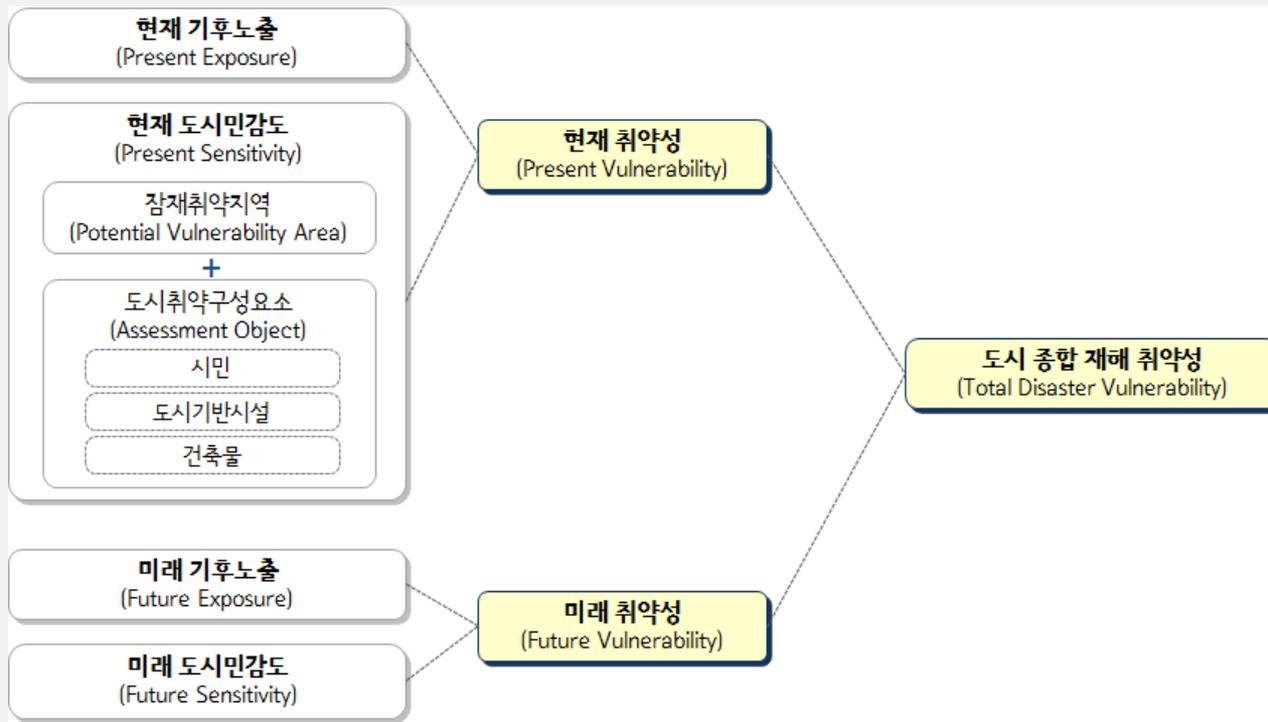
- 2012년 7월 이후 수립·변경되는(계약시점) 도시계획은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여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해야 함
- 도시의 기후, 개발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해취약등급을 도출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

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3-2-3.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

(9)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, 재해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■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배포(2013.10)

-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, 재해취약성분석 실무자를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, 구조, 분석방법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매뉴얼 작성 및 배포
-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재해를 폭우, 폭염, 폭설, 가뭄, 강풍, 해수면상승 등 6개 재해로 구분하고, 재해별 분석 지표의 자료구축방법 제시



■ 재해취약성분석,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(2014~2015)

-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(현 도시방재·수자원연구센터)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해안전도시 조성의 발돋움을 위해 매년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취약성분석,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
- 도시의 재해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지자체에 대하여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기술지원 및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

■ 법률 개정을 통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(2015.0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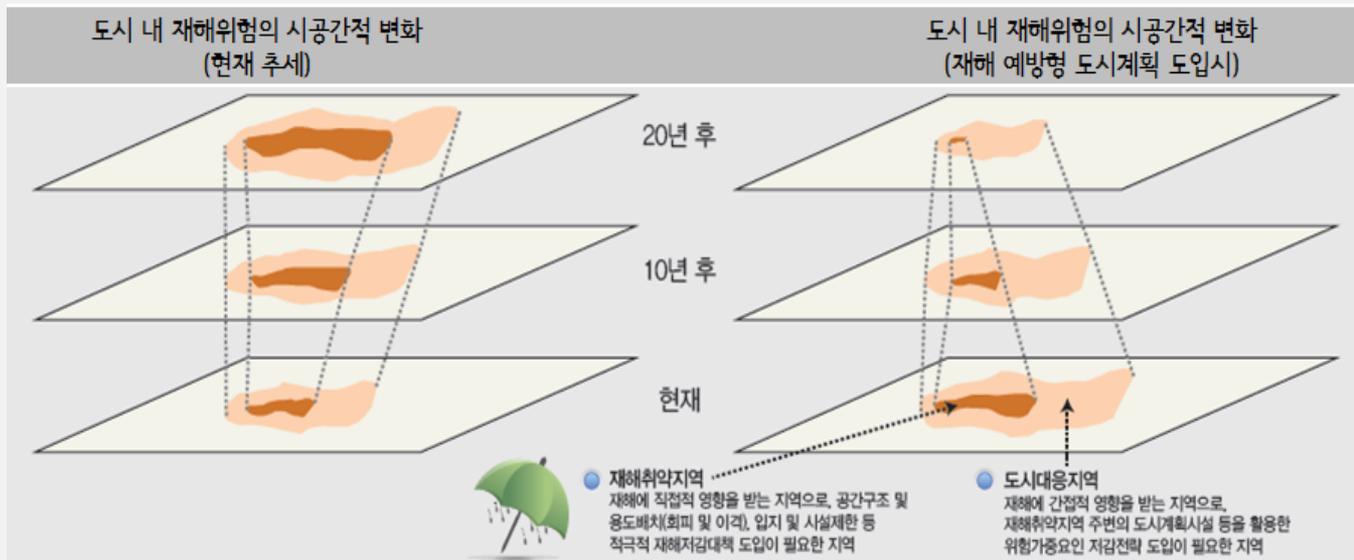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0조, 제27조)을 개정하여 도시·군기본 계획 및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 함
-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부문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여 대형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기반 마련

제20조 (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)

- ②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, 입지,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(이하 "토지적성평가"라 한다)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(이하 "재해취약성분석"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27조 (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)

- ③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.



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(2016. 05)

-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를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법·절차 및 분석 대상 및 적용 범위 등 행정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
-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, 분석결과의 제공 및 정보관리,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 관한 교육 의무사항 규정

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」 개정(2017.05)을 통해 재해 취약성분석의 적용대상 확대

- 대규모 재해발생지역(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상 특별재난지역 등)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토록 추가
- 재해로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시복원력을 감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내용 추가

■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(2018. 01)

● 1-3-4. 도시.군기본계획 수립.변경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

- ✓ (1) 도시.군기본계획을 수립.변경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. ⇒ 일반원칙 추가
- ✓ (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도시.군기본계획을 수립.변경할 수 있다. ⇒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 수정
- ✓ (3) (2)의 경우라도 시행주체가 해당 시.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할 수 있다. ⇒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 수정

● 1-3-5. 도시.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

- ✓ (1) 도시.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⇒ 일반원칙 추가
- ✓ (2) 도시.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입안할 수 있다. ⇒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 및 자구 수정
- ✓ (3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.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 ⇒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 수정
- ✓ 마. 해당 도시.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(부분해제를 포함한다) ⇒ 추가
- ✓ 바.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.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⇒ 추가
- ✓ 사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방재지구의 지정.변경은 제외한다)
- ✓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.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.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⇒ 삭제
- ✓ (4) (2), (3)의 경우라도 시행주체가 해당 시.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할 수 있다.



Part 2.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>>



■ 1-3-2.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범위

- 재해취약성분석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(이하“시.군”이라 한다)이 도시.군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 도시.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(재해취약성 분석이 가능한 6개 재해유형에 한함. 이하“대규모 재해발생지역”이라 한다.) 또는 해당 시.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.

■ 1-3-3.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

- (1)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.군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.군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- (2)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도시.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- (3) 대규모 재해발생지역 등에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- (4)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과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가 포함된 도시복원력 개념을 감안하여 수립한다

■ 1-3-4.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

- (1)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할 수 있다.
 - ✓ 가.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·변경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
 - ✓ 나.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·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·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(3) (2)의 경우라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“시행주체”라 한다)가 해당 시·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할 수 있다.

■ 1-3-5.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

- (1)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2)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입안할 수 있다.
- (3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 - ✓ 가.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(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)에 위치하는 경우
 - ✓ 나.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
 - ✓ 다.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
 - ✓ 라.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
 - ✓ 마.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(부분해제를 포함한다)
 - ✓ 바.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

- ✓ 사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방재지구의 지정·변경은 제외한다)
 - ①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(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②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(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③ 용도지구·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(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)
 - ④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
 - ⑤ 기반시설 중 도로·철도·궤도·수도·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(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✓ 아.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(녹지·공공공지에 한정한다)의 설치
- ✓ 자.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(4) (2), (3)의 경우라도 시행주체가 해당 시·군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재해취약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할 수 있다.

제2장 재해취약성분석의 일반원칙

■ 2-1-2. 재해취약성 분석단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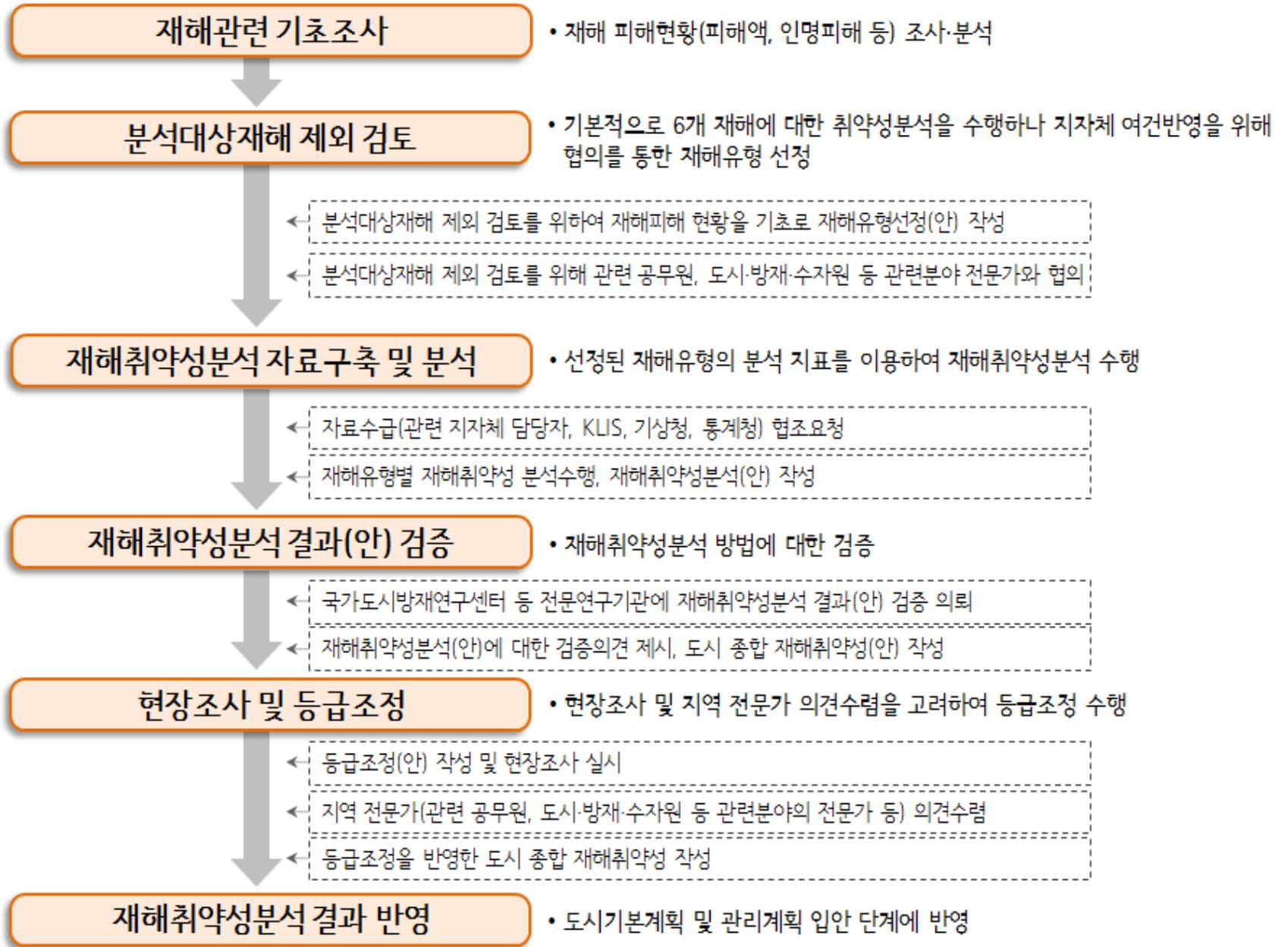
-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·변경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이 되는 시점부터 가장 최근 해당 시·군의 인구센서스 집계구로 분석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수면상승 취약성분석은 해안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시·군의 인구센서스 집계구로 한정한다.

■ 2-2-1. 재해취약성 분석시기

-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·변경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며, 대규모 재해발생지역 등의 경우에는 재해저감대책 수립 전에 실시한다.

■ 2-2-2. 재해취약성 분석절차

- 재해취약성분석은 그림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, 각 절차별로 수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(1) 재해관련 기초조사에서는 발생재해 유형과 피해액, 인명피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피해현황을 조사 분석한다.
- (2)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재해의 검토절차는 [별표 1]에 따르며, 재해현황분석, 지역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취약성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재해유형을 결정한다(단, 폭우재해는 제외한다).
- (3) 재해취약성 자료 구축 및 분석에서는 선정된 재해유형의 분석지표를 [별표 2]에 따라 구축하고, 매뉴얼에 따라 분석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(안)을 작성한다.



- (4) 재해취약성분석 결과(안)을 작성 후 전문연구기관에 재해취약성분석 결과(안)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다.
 - 가. 검증기관에서는 3-2-5.(1)의 내용을 검증하고 검증의견을 제출 한다.
 - 나.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증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확정하고 도시종합재해취약성(안)을 작성한다.
- (5)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된 도시종합재해취약성(안)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도시종합 재해취약성을 작성한다.
- (6)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도시·군기본계획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재해취약성분석의 실시

■ 3-1-2.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 결정

- (1) 재해취약성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은 [별표 1]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해 피해 현황 분석 결과, 지역의 지역 전문가(관련 공무원 1인, 도시·방재·수자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2인, 지역주민 2인 등)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을 결정한다.
- (2)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폭우재해를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여야 하며, 해안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면상승을 분석대상 재해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■ 3-2-4.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

- (1)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검증기관과 협의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,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증의견을 분석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(2)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.

■ 3-2-5. 검증의 내용

- (1)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을 의뢰한 경우 검증기관과 협의하여 검증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되,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.
 - 가. 재해취약성분석 기초자료의 신뢰성
 - 나. 기초자료의 가공 및 분석과정의 적정성
 - 다. 분석등급 결과의 적정성
 - 라. 그 밖에 의뢰자가 요청하는 사항
- (2) 검증기관은 검증의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필요시 협의를 통해 검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(3) 의뢰자는 재해취약성분석결과의 검증에 따른 수수료를 검증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며, 검증수수료의 대가 산정기준은 [별표5]에 따라 검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■ 〈시기별 분석결과의 검증 방법(국토교통부 전자민원(13804330)참조)〉

- Case 1. 2016.5.11 이전 용역계약, 2017.1.1 이전 입안 또는 2016.5.11 이전 용역계약, 2017.1.1 이후 입안 : 종전 매뉴얼 또는 지침 선택 적용가능(검증 미실시 가능)
- Case 2. 2016.5.11 이후 용역계약, 2017.1.1 이전 입안 : 지침에 따라 분석 실시하되 검증 미 실시
- Case 3. 2016.5.11 이후 용역계약, 2017.1.1 이후 입안 : 지침에 따라 분석 실시하고 검증실시

제4장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활용 및 지원체계

제1절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

■ 4-1-1.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제공

- (1) 시행주체 외의 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입안 제안지역의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[별표 6]에 따른 신청서류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가. 사업계획서
 - 나. 편입 토지조서
 - 다. 입안 제안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전산자료
- (2) (1)에 따라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확인을 요청받은 시행주체는 [별표 7]의 서식에 따라 해당 입안 제안지역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내용 외에 집계구별 분석 값은 제공하지 아니한다.
- (3) 시행주체는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입안 제안지역에 여건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확인서 발급 시 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.

제2절 재해취약성분석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

■ 4-2-1. 재해취약성분석 전산프로그램

- (1)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취약성분석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해취약성분석 수행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를 마련하여 시행주체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- (2) 국토교통부장관은 (1)에 따라 표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(이하 “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표준프로그램 외의 전산프로그램이 재해취약성분석의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, 재해취약성분석 전산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절차, 방법, 기준 및 인증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(3) 재해취약성분석은 (1)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한다.

■ 4-2-2.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정보의 관리 및 보안대책

- (1)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물은 시행주체가 지정하는 전산장비를 통해 운영 및 관리하며,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- (2)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 제공하지 아니한다.
- (3) 시행주체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라 사용·가공 또는 생산하는 자료가 재해취약성분석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(4)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, 「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」,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보안관리규정, 기타 보안업무 및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■ 4-2-3. 재해취약성분석 담당 공무원 및 기술자 교육

-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담당업무 수행자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,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(1)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
- (2) 재해취약성분석 시행주체의 분석업무를 대행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전문용역기관 담당자

■ 4-2-4. 국토연구원의 역할

- (1) 재해취약성분석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가. 3-2-5.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
 - 나. 분석결과에 따라 마련된 재해저감대책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
 - 다. 4-2-3.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의 교육.지원
 - 라. 재해취약성분석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등
- (2) 국토교통부장관은 (1) 다호와 라호의 사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(3) 국토연구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시계획·방재·건축·환경·연안·수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기타 사항

- 5-1. 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부칙<2016.5.11>
 -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4-1-1.과 4-3-3.의 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 - 2. (적용례)
 - (1)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·군 기본계획 및 도시·군 관리계획 부터 적용한다.
 - (2)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 중에 있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입안권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의한 방법과 이 지침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(3) 4-2-1.의 규정은 도시 종합재해취약성이 완료된 지자체에 한하여 적용한다.
 - 제3조 (경과조치) 이 지침 이전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에 따라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.

- 부 칙<2017.05.26.>
 -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<2018.1.2>
 -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- 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.



감사합니다.



국토연구원



KRIHS

